

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(제16조제2항 관련)

I. 시설의 종류

구분		시설설치 내용
공 통 필 수	편의 시설	·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」 별표 2 제 2호에 따른 매개시설 · 실내복도,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· 장애인용 화장실(대변기·소변기·세면대), 샤워실·탈의실 등 위생시설 · 점자블록, 유도 및 안내설비,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· 관람석, 매표소 등 기타시설
	수영장	·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·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·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·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· 보조 휠체어
실내 시설	실내체육관	· 좌식배구지주, 골볼(Goal ball) 골대
	야외경기장	· 경기장 진입 시설
	생활체육공원 등	·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

II. 설치의무 적용 시기

1.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: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
2.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: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
3.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: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